

1. 개정이유

제대군인지원 등록과 제대군인 전직지원 시스템 홈페이지(V-net)의 회원 등록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대군인 등록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사진 규격 정비(안 제2조제1항)

- 1) 제대군인 지원 신청시 사진규격을 기본규격(3.5센티미터×4.5센티미터)으로 개정

나. 별지 제1호 서식 개정

- 1) 보훈·보상·복지과에서 지원을 받는 내용과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지원받는 내용을 분리하여 민원인의 이해와 편의를 돕고 센터 회원 가입을 위한 ID 부여
- 2) 별지서식에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수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서식 간소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10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미심의

총리령 제 호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(가로 3센티미터, 세로 4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)”를 “(3.5센티미터×4.5센티미터)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대군인지원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15일 (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기간 제외)					
제대군인	성명				주민등록번호		-		
	주소	(전화번호: , 전자우편주소:)							
	군별		계급		군번		병과		
	입대일		전역일		복무기간	년	개월		
군복무 기간	입대일		전역일		복무기간	년	개월		
	입대일		전역일		복무기간	년	개월		
	입대일		전역일		복무기간	년	개월		
군인연금 수급여부	여[] / 부[]								
지원사항 (*별도 신청)	《보훈·보상·복지과》				《제대군인지원센터》				
	[]취업지원* []교육지원(본인,자녀)*				※홈페이지(V-net) 회원(ID:)				
	[]보철구 지급* []보훈병원 진료비 감면				[]취·창업상담 및 알선				
	[]법률구조지원* []주택 우선공급*				[]직업교육훈련(전문교육,사이버,직업훈련비)*				
	[]각종 대부지원*[]공공시설의 이용				[]전직지원금*				

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및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제대군인 지원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지방보훈청장 귀하
보훈지청장

신청인 제출서류	신청인의 사진(3.5센티미터 × 4.5센티미터) 1장	수수료 없 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병적증명서 *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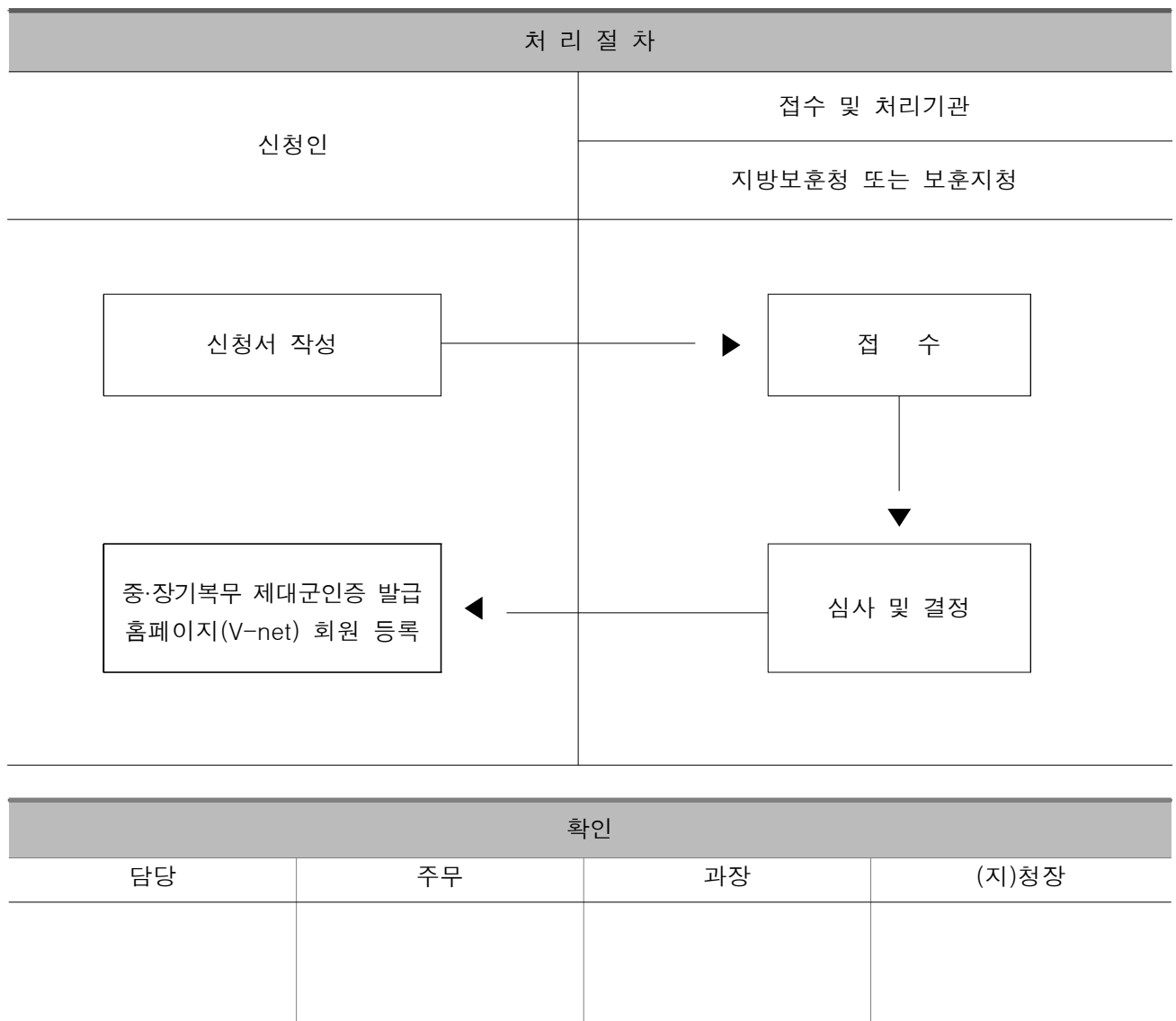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* 동의함 [] 동의하지 않음[]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)

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지원신청) ①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 제4조제1항 본문 및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“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라 법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(이하 “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“이라 한다)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대군인지원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사진(<u>가로 3센티미터, 세로 4센티미터 인 것을 말한다</u>) 1장을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2조(지원신청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(3. 5센티미터×4.5센티미터)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